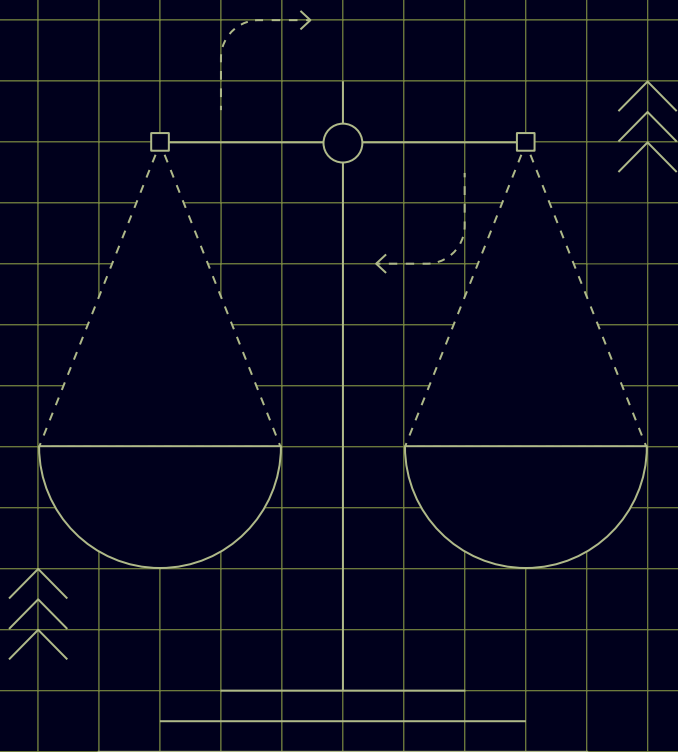


기아

공정거래
자율준수 가이드
엑기스
공정거래법편



공정거래법상 금지행위의 유형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법 제5조) 자율준수 가이드 29쪽
독과점 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

부당공동행위

(법 제40조) 자율준수 가이드 62쪽
사업자 간 가격·거래조건 등을
합의를 통하여 결정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법 제45조) 자율준수 가이드 36쪽
부당한 방법으로 거래하여
공정한 거래를 해치는 행위

부당지원행위

(법 제45조 제1항 제9호) 자율준수 가이드 78쪽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등을
통하여 다른 회사에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법 제46조) 자율준수 가이드 103쪽
거래상대방에게 판매가를 지정하여
강제하는 행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법 제47조) 자율준수 가이드 81쪽
헐값제공, 고가매입,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하여 특수관계인 등에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조치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관련 매출액의 4% 이내 또는 10억 원 이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해요!

부당지원행위 금지

부당지원행위는
다른 회사에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법 제45조 제1항 제9호)



부당지원행위의 유형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게 자금·자산·상품·인력 등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며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상당한 규모의 거래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게 자금·자산·상품·인력 등을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일명 “일감 몰아주기”)

통행세 거래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쳐서 거래하는 행위 또는 그 역할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 자율준수 가이드 78쪽

CHECKLIST

* 자율준수 가이드 87-88쪽

- ☒ 입찰 또는 비교견적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거래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지 않는다.
- ☒ 계열회사와 거래를 개시하거나 갱신하기 전에 다른 사업자와의 가격 등 거래조건을 확인한다.
- ☒ 계열회사에 자금 또는 인력을 상당히 낮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하지는 않는다.
- ☒ 회사와 계열회사 간의 거래로 어느 일방의 자금 유동성이 확보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한다.
- ☒ 회사와 거래상대방 사이에 개입된 계열회사의 역할이 없거나 그 역할에 비해 많은 대가가 지급되진 않았는지 확인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제공주체 ▶

동일인이 자연인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제공객체 ▶

- ①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친족)
- ② 특수관계인이 20% 이상 소유한 계열사
- ③ 위 계열회사가 50% 초과 소유한 계열사
(법 제47조)



부당한 이익제공의 유형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정상적인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하게 거래하거나,
현금 기타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사업기회의 제공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합리적 고려·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정보 수집, 평가 절차 등 거래상대방에 대한
적합한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 자율준수 가이드 81쪽

CHECKLIST

* 자율준수 가이드 87-88쪽

- ☒ 계열회사와 자금,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거래하기 전에 해당 거래가 가능한 계열회사 외 다른 사업자가 있는지 확인한다.
- ☒ 동일 또는 유사한 거래에 있어 계열회사 간 계약조건과 비계열회사 간 계약조건을 수시로 점검한다.
- ☒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와 거래 시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등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한다.
- ☒ 계열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합리적인 사유(독보적 기술력 등)가 있는지 확인한다.

민감 정보의 교환 금지

정보교환 담합이란,
사업자 간 가격, 생산량 등의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법 제40조 제1항 제9호)



교환이 금지되는 정보는?

①상품 또는 용역의 원가 ②출고량, 재고량 또는 판매량
③상품, 용역의 거래조건 또는 대금, 대가의 지급조건 등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주고 받는 것이 금지되는지?

우편, 이메일, 전화통화, 회의 등 수단을 불문하며,
중간 매개자를 거쳐 간접적으로 알리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된다는 것은?

시장상황, 시장의 구조 및 상품의 특성, 행위자들의
시장점유율, 정보교환의 시점, 기간과 빈도, 정보교환의
주체 및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자율준수 가이드 68~69쪽

CHECKLIST

* 자율준수 가이드 74~75쪽

- ☒ 사업자단체 회의 등에서 시장동향, 가격, 원가 등 민감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 ☒ 경쟁사와의 모임의 성격과 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불필요한 모임은
참여하지 않는다.
- ☒ 경쟁사가 이메일, 문자, 모임 등을 통해 담합 관련 언급 시 즉각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회사에 관련 내용을 보고한다.
- ☒ 경쟁사 정보를 인용 시 자료의 출처를 정확히 명시한다.

자율준수 가이드의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준법경영 지원시스템



기아는 윤리·준법 경영 확산을 위해
준법경영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통하여 자율준수 가이드뿐 아니라 뉴스레터,
그 밖의 가이드라인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접속경로

- ▶ Autoway 접속 ▶ 좌측 상단 버튼 클릭
- ▶ “업무 Tools” 중 “업무시스템” 클릭
- ▶ 업무시스템 페이지에서 “준법” 검색
- ▶ 준법경영지원시스템 접속

기아 자율준수관리자와 CP 전담부서를 소개합니다!

자율준수 관리자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운영책임자로, CP 계획 수립과 운영(교육, 점검, 평가 등),
최고경영층 보고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2024년 1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준법지원인인
이우상 준법지원팀장을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로
선임하였습니다.

자율준수(CP) 전담부서



자율준수 전담부서는 자율준수관리자를 보좌하는 부서로,
준법지원팀입니다.

자율준수 전담부서의 역할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실무 운영
 - √ CP 관리체계 운영
 - √ CP 문화 확산 및 교육
 - √ 사전감시제도 운영
 - √ CP 운영 효과성 평가
- 자율준수협의회 운영 및 관련 부문 지원